

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

제정 2025. 5. 22.

제2차 개정 2026. 8. 20.

제1조(사업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/한국연구재단에서 상지대학교(이하 ‘대학’이라 한다.)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(이하 ‘사업’이라 한다.)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기간) 총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사업 종료시까지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,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부서와 이 규정에 따른 제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대학혁신사업단) ① 사업의 시행 및 성과 모니터링, 사업비 중앙관리를 위하여 대학혁신사업단(이하 ‘사업단’이라 한다.)을 둔다.

② 사업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, 단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(개정 2025.12.23., 2026.08.20.)

③ 사업단에는 대학혁신사업팀, 교육혁신센터, 전공설계지원센터, 학생생애주기지원센터를 둔다.(신설 2026.08.20.)

④ 대학혁신사업팀 및 각 센터에는 팀장, 센터장과 필요한 교수, 직원 및 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.(신설 2026.08.20.)

⑤ 전담인력의 채용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.(개정 2026.08.20.)

⑥ 대학혁신사업팀 및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 (개정 2026.08.20.)

1. 대학혁신사업팀(개정 2026.08.20.)

가. 사업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나. 사업 추진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

다. 사업비 예산 배정 및 운영, 결산에 관한 사항

라.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, 결과 분석 및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

마.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

2. 교육혁신센터(개정 2026.08.20.)

- 가. 대학교육혁신 질 관리 및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
- 나. 학생역량평가 관련 연구개발·환류에 관한 사항
- 다. 역량기반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 개선에 관한 사항
- 라. 전공능력평가 가이드 개발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
- 마. 그 밖에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3. 전공설계지원센터(개정 2026.08.20.)

- 가. 학생 맞춤형 전공 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
- 나. 학생 맞춤형 전공 설계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다. 전공선택·변경 상담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- 라. 학생 맞춤형 전공설계 과정 및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 관리와 관련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
- 마. 그 밖에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4. 학생생애주기지원센터(개정 2026.08.20.)

- 가. 학생의 대학 적응 및 생애주기별 성장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
- 나. 학생 자기이해 및 전공·진로 탐색과 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
- 다.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- 라. AI 기반 학생 성장진단, 진로데이터 분석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마. 그 밖에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조(대학혁신위원회)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계획상의 혁신전략에 근거한 투자계획 수립 및 자체 성과관리 등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대학혁신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총장으로 하며, 위원은 부총장, 교무연구처장, 기획처장, 학생취업지원처장, 대외협력처장, 행정지원처장, 대학혁신사업단장, 대학혁신사업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재학생 포함 12명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③ 대학혁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
- 1. 대학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전략 수립
- 2. 전략과제의 운영방향 및 사업비 집행의 기본 방침 설정

3.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주요 추진성과의 종합 평가
4. 관련 운영규정 및 세칙의 제정·개정·폐지
5. 기타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

제6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대학혁신사업단장 및 대학혁신사업부단장을 포함하여 재직중인 교원, 외부 전문가, 재학생 중 총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대학혁신사업단장으로 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
1.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및 세부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사항
2. 예산편성, 사업비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내부 모니터링
4.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의 검토 및 개선안 반영
5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운영 관련 사항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사업 관리 및 연차 및 종합성과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(신설 2025.12.23.)

제7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성과관리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총장이 교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, 재직중인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을 포함한다.

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.

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
1.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진단
2.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컨설팅
3.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운영 및 성과창출 요소 발굴·확산
4. 기타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⑥ 자체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 및 대학혁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비) ① 사업비는 대학혁신사업단에서 총괄 관리한다.

- ② 사업비 중앙관리부서는 사업단으로 한다.

- ③ 사업비는 「상지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사업비 집행 지침」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관리한다.

- ④ 사업연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(정산보고서)를 제출한다.

제9조(관련 규정의 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/한국연구재단,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규정 제·개정) 이 규정은 대학혁신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의 규정류 제·개정 절차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한다. (개정 2025.12.23.)

부칙 (기획예산팀-1234, 2025. 05. 22.)

이 규정은 202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093, 2025. 12. 23.)

이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166, 2026. 08. 20.)

이 규정은 2026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